

변경 대비 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경사항	결산	변동성	법 개정
1	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1)	-	○	-
2	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 TIF 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2)	-	-	-
3	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1)	-	-	-
4	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1)	-	-	-
5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2)	-	-	-
6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2)	-	-	-
7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2)	-	-	-
8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2)	-	-	-
9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2)	-	-	-
10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2)	-	-	-
11	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2)	-	-	-
12	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	1), 2)	-	-	-
13	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 2 호(주식)	3)	-	-	-
14	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3)	-	-	-
15	미래에셋 MSCIACWORLD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)(UH)	4)	-	-	○
16	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4)	-	-	○
17	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4)	-	-	○
18	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자투자신탁(USD)(채권)	-	○	-	-
19	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(H-USD)(주식-파생형)	-	○	-	-
20	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주식)	-	○	-	-
21	미래에셋변액보험베트남증권투자신탁(H-USD)(주식-파생형)	-	○	-	-
22	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○	-	-
23	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2)	○	-	-
24	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	2)	-	-	-
25	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	-	○	-	-
26	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-	○	○	-
27	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-
28	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(H)(채권)	-	-	○	-

2. 변경 사항:

- 1)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추가
- 2)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추가
- 3) 운용역 변경
- 4) 클래스 신설
- 5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6) 변동성 값 업데이트
- 7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효력발생 예정일: 2020년 7월 30일(목)

4. 변경 내용:

1)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추가
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상생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(주식혼합)	
변경 전	변경 후
<u>김진하, 목대균</u>	<u>김진하(책임), 목대균(책임), 유의형(부책임)</u>

2)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추가

-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)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
-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[제 2 부 별첨 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나. (2) 투자제한	-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 [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]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.~마. <생략> <신설>	- 미래에셋스마트알파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(채권혼합) [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]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.~마. <좌동>

		바.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3)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

변경 전	변경 후
<u>김명준</u>	<u>송진용</u>

-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

변경 전	변경 후
<u>이현경(책임), 김명준(부책임)</u>	<u>이현경(책임), 이상명(부책임)</u>

4) 클래스 신설

펀드명	신설 클래스	판매 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(%)	환매 수수료(%)
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)(UH)	종류 C-P	0.74	-	-
	종류 C-Pe	0.37	-	-
	종류 C-P2	0.60	-	-
	종류 C-P2e	0.30	-	-

펀드명	신설 클래스	판매 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(%)	환매 수수료(%)
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(H)	종류 C-P	0.74	-	-
	종류 C-Pe	0.37	-	-

펀드명	신설 클래스	판매 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(%)	환매 수수료(%)
미래에셋스마트롱숏70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종류 C-P2	0.75	-	-
	종류 C-P2e	0.37	-	-

[참조1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
종류 C-P	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
종류 C-Pe	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
종류 C-P2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
종류 C-P2e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,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

5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 (%)	변경 후 (%)
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투자신탁 1호(주식혼합)	3	2	12.64	17.68
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투자신탁(H)(채권)	4	4	-	8.07
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3	2	11.76	18.76
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	1	28.9	33.49

6)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제 44 조 (집합 투자업자 및 신 탁업자의 변경)	<p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 3 <생략></p> <p>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6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3 <좌동></p> <p>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~6 <좌동></p> <p>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